

고 소 장

고소인 0 0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 (전화: ㅇㅇㅇ - ㅇㅇㅇㅇ)

주민등록번호 : 111111 - 1111111

피고소인 △ △ △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전화: ○○○ - ○○○○)

주민등록번호: 111111 - 1111111

고소취지
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체유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 소 사 실

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딸 □□□□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○○기업의 대표로, 고소인의 딸과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던 중 피고소인이 유부남인 관계로 맺어질수 없는 사이임을 비관해온 고소인의 딸이 20○○. ○. ○. 함께 여행을 떠났던 ○○도 ○○군 소재 ○○휴양림 방갈로에서 음독자살을 하자 고소인의 딸과의 부정한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사체를 인근 숲에 유기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O O 년 O 월 O 일 위 고소인 O O O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□공소시효일림 ۗ^^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161조
범죄성립 요 건	사체, 유골,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, 유기, 은닉 또 는 영득한 때		
형 량	・7년 이하의 징역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 (항고) ・근거: 검찰청법 10조 ・기간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 (재정신청) ・근거: 형사소송법 제260조 ・기간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 (헌법소원) ・근거: 헌법재판소법 68조 ・기간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 		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